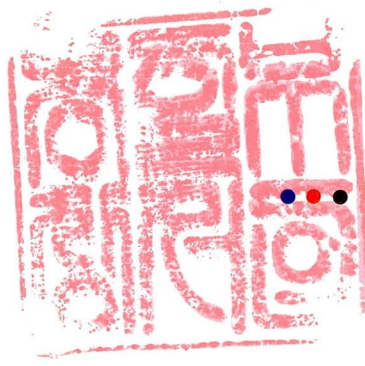


2007-11-4



Contents



● ● ● 남북경협사업 - 사업구상에서 계획수립까지

- 1.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는? 2
- 2. 대북사업의 기본여건은 어떠한가? 3
- 3. 사업구상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4
- 4. 사업타당성 검토시 유의할 사항은? 5
- 5. 계획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6

● ● ● 남북경협사업 - 사업계약부터 계약체결까지

- 6. 북측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은? 8
- 7. 북한지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9
- 8. 북측과 사업협의를 위해 경험사무소를 방문하는 절차는? 10
- 9. 사업협약시 기본자세와 고려할 사항은? 11
- 10. 사업협약시 분야별 주요 협의내용은? 12
- 11. 계약체결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에 포함시킬 내용은? 14

● ● ● 남북경협사업 - 사업실행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2. 사업과정에서 견본과 시제품은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가? 17
- 1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측과의 업무연락 방법은? 18
- 14. 사업개시를 위한 조업준비는 어떻게? 19
- 15. 사업과정에서 북측 실무자와의 기술협의를? 21
- 16. 사업추진시 각종 문서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2
- 17. 북측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송과 통관절차는? 23
- 18. 대금결제 방법은? 25
- 19.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은? 26

● ● ● 기타 참고사항

- 20.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의 지원 기능 28
- 21.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블로그 29
- 22. 민경련 산하 총회사별 담당분야 및 연락처 30



남북경협사업 - 사업구상에서 계획수립까지

1.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는?
2. 대북사업의 기본여건은 어떠한가?
3. 사업구상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4. 사업타당성 검토시 유의할 사항은?
5. 계획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는?

추진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북측에 사업의향을 타진하고, 북측에서 사업 추진을 희망하면 남북 당사자가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대북사업 추진 기본 절차

추진절차	주요내용	관련기관
대북사업 검토·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 경험환경 이해 및 사업추진 분야별 여건 파악 전략물자, 반출·입 승인대상 여부 검토 등 	통일부(경제협력본부, 경협사무소) 경협지원 유관기관 등
북한주민접촉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간접 접촉 모두 해당 	통일부(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검토·자문 	경협지원 유관기관 등
대북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에 사업의향 타진 	경협사무소
북측 초청장 발급(개성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에 방문자 인적사항 전달 	경협사무소
방북 절차 수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및 출입통행계획 입력 방북 안내교육 이수 	통일부(남북교류협력시스템) 통일교육원
개성 방문 및 사업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사업당사자간 사업협의 견본 제작 의뢰 등 	경협사무소
의향서·합의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당사자간 사업추진 기본사항 합의 경제협력사업은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통일부(경제협력본부, 경협사무소)
계약서 작성 및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협의의 내용에 근거 작성 경협지원 유관기관 등 전문가의 검토·자문 경제협력사업은 협력사업승인 신청 및 외국환은행에 신고 	통일부(경제협력본부, 경협사무소) 외국환은행
설비, 원부자재 반출 등 투자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대상 품목은 반출·입 승인 신청 협력사업의 경우 투자자금 송금시 외국환은행 확인, 현물투자시 반출후 외국환은행 보고 	통일부(경제협력본부), 세관, 외국환은행
조업준비 및 사업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투자시 현지 설치, 기술교육 등을 위한 방북 초청장 발급 및 방북 승인 신청 	통일부(경제협력본부)
업무 연락·기술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작업지시, 기술지도, 품질검수 등 	경협사무소





2. 대북사업의 기본여건은 어떠한가?

제3국과의 사업에 비해 위탁가공비, 인건비 등이 저렴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남북관계 현실에서 오는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측면

- ❖ 위탁가공비, 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언어소통이 원활
- ❖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시 관세 면제
- ❖ 경협사무소 개소 이후 남북기업간 직접거래 증가로 거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등 경협여건이 개선되는 추세

고려할 여건

- ❖ 북한지역 사업현장 방문, 현지 기술지도, 근로자 교육, 품질관리 및 검수 등에 다소 어려움
 - 일반적으로 설비투자시 현장 설치, 가동, 교육 등의 경우에는 방문 가능
- ❖ 남북간 직접 통신(전화, 팩스, 인터넷)이 되지 않아 사업현상과의 실시간 연락·협이에 어려움
- ❖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을 제외하고는 육로수송이 어려워 대부분 해상수송에 의존

북한의 대남경협 창구

- ❖ 북한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사업창구를 일원화하여 남측기업과 사업협의, 계약체결 등 사업추진 전반을 담당
 - 민경련은 중국의 단둥, 북경, 연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에 대표부를 설치, 운영중
- ❖ 사업분야별로 민경련 산하 총회사가 분담하고, 실제 생산은 해당 기업소에서 진행

세별총회사	개선총회사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명지총회사
의류	농수산, 일반광물	경공업	전기·전자·IT	특수광물



3. 사업구상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남북경협지원 유관기관,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구상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통일부의 경협사무소, 남북경제협력본부 등의 담당자와 우선 상담
 - 경협사무소는 분야별(의류, 농수산, 전기·전자, 광물 등)로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의 민간 전문가를 배치하여 대북사업 관련 각종 상담을 진행
 - 경협사무소에서 개최되는 경협사례발표회, 교역설명회 등도 활용
-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남북경협지원 유관기관의 전문가 자문 및 상담을 통해 사업구상에 필요한 정보 수집
 -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신규 대북사업 추진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자문을 실시
- ❖ 유사분야 진출기업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 기업의 경험도 참고
- ❖ 남북경협지원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경협기업 모임에 참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유용
 - 한국무역협회(남북교역투자협의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 등

남북경협지원 유관기관

기 관	지 원 내 용	연 락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환경, 경험절차·제도 등 상담 및 정보제공, 시책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협력선 모색 및 계약 협상 지원 • 자금, 경영·기술 현지지도, 판로지원 •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 운영 	남북협력지원실 02)769-686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정보 제공, 조사연구, 설명회 개최 • 남북교역 및 투자상담 • '남북교역투자협의회' 운영 	남북교역지원팀 02)6000-5243
KOTRA (www.kotra.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경제 정보 수집 및 조사연구 • 거래선 알선 및 위탁기공교역 상담회 개최 등 	글로벌 코리아 본부 02)3460-7413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기금 대출, 손실보조 등 	남북협력본부 02)3779-6706



4. 사업타당성 검토시 유의할 사항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 국내 사업기반이나 경험이 없는 분야의 사업추진은 가급적 자제
 -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사업추진 능력 부족으로 투자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남북간 신뢰구축에 장애
- ◆ 남측 기업간 사업영역 중복 여부
- ◆ 사업분야별 특성 및 경험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방식(협력사업, 위탁가공교역, 일반 교역)을 결정

사업분야별 여건 및 주요 고려사항

- ▶ 농림수산물 등 반입
 - 통일부 고시에 따른 반출입 승인 및 쿼터대상 품목 해당 여부
 - 현지 품질검사 제약에 따른 품질문제, 물량 확보, 신선도 유지 등
 - 남북간 직항로로 운송된 제품만 북한산으로 인정
- ▶ 의류 위탁가공
 - 의류분야 북측 노동력은 대체로 우수
 - 사업중에 납기, 수량,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처
 - 특수가공(화학처리, 고급프린트 등) 및 마무리 처리(라벨 부착, 포장 등) 대책
 - 북측은 비수기 물량 확보에 큰 관심
- ▶ 전자전기분야 위탁가공 및 협력사업
 - 소프트웨어 중심의 IT분야에 대한 북측의 협력 의지는 강한 편
 -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기본 자질은 우수하나, 응용분야 현장경험은 다소 부족
 - IT분야 협력에 중요한 인터넷 환경은 미비(남측과 인터넷 연결이 안됨)
 - 관련설비 투자시 전략물자 반출 규제대상 여부 사전검토
 - ※ 전략물자정보센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sec.go.kr)을 통해 확인





5. 계획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북사업은 기업의 능력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사업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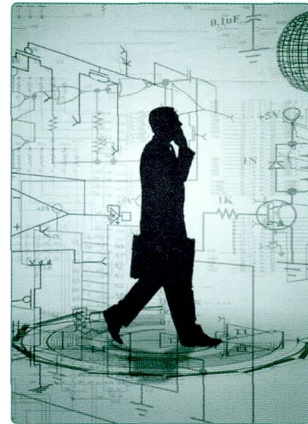
- ❖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사업전략이 바람직
- ❖ 추진하는 전체 사업중 대북사업 비중이 클 경우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대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고려

사업계획 종합 점검

- ❖ 북측에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사업여건, 능력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

사업계획 점검 자가진단 리스트(예시)

- 대북사업 추진 목표와 최고 경영자의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한가?
-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 남북관계 상황 변화시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가?
- 설비투자 등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가?
- 투자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가?
- 북측내 원부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는가?
- 물류비가 많이 들거나, 납기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 제품생산의 기술이전이 용이하여 조기에 정착이 가능한가?
- 투자비 회수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 전력 등 간접시설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아닌가?
- 생산제품의 판로는?
- 유사한 다른 회사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 투자할 설비의 대북 반출에 애로는 없는가?





남북경협사업 - 사업제안부터 계약체결까지

6. 북측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은?
7. 북한지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8. 북측과 사업협의를 위해 경험사무소를 방문하는 절차는?
9. 사업협의를 기본자세와 고려할 사항은?
10. 사업협의를 분야별 주요 협의내용은?
11. 계약체결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에 포함시킬 내용은?



6. 북측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은?

사업제안서를 작성, 경험사무소에 Fax 등을 통해 보내주면, 북측의 의사를 타진하고 북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제안서 작성

- ❖ 사업제안서에 남북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북측의 협조사항 명기

신규 대북사업 제안서에 포함할 사항(예시)

- ▶ 회사 및 추진사업의 개요, 사업품목, 생산물량, 관련 요구사항(입지조건, 필요 공장규모, 인력, 간접시설) 등

경험사무소를 통한 북측 의사 타진

- ❖ 사업추진 희망기업이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을 Fax 등으로 경험사무소에 보내 주면, 북측의 추진의사 타진
 - 북측이 사업 추진을 희망하면 경험사무소에서의 사업 당사자간 면담을 주선
- ❖ 경험사무소는 남측기업이 북측관계자를 만나지 않고 사업의향서 전달만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신규 대북사업 추진체계를 마련

신규 대북사업 추진체계



- ※ 사업제안 기업은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통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북한방문승인, 협력 사업(자)승인, 반출입승인 등



7. 북한지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북한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발행한 초청장이 필요하며, 남북 경협사무소에서 초청장 발급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 방콕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면담 희망일자, 만나고 싶은 북측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Fax 등을 통해 경협사무소로 전달하면 북측과 협의하여 방북 초청장 발급을 지원
 - 방문자 인적사항에는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기재
 - 북측상대방은 총회사 관계자 뿐 아니라 공장단위 관계자도 가능
- ❖ 방북 초청장 발급에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1회 방북 가능한 단순 초청장으로 발급
 - 그러나 북측과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일정기간 (3개월 등) 수시 방북 가능한 복수초청장도 가능
- ❖ 평양 방문시 사증발급여부도 경협사무소를 통해 사전확인 가능

경협사무소를 통한 초청장 발급지원 현황

• 2005.11~12월 1건, 20명 • 2006년 261건, 2,821명 • 2007.1~10월 348건, 3,3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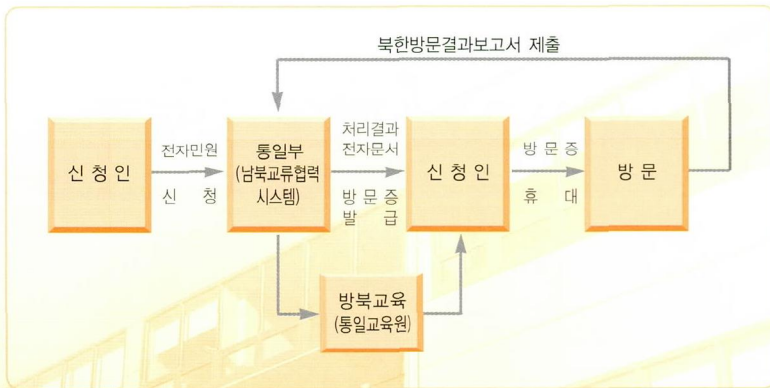


8. 북측과 사업협의를 위해 경협사무소를 방문하는 절차는?

경협사무소는 서울 광화문에서 약 60km 거리에 있는 개성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협사무소 방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 ❖ 우선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북한방문증명서' 를 소지해야 함
 - '북한방문증명서' 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
- ❖ 또한 북한방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북 안내교육을 이수해야 함
 - 방북 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실시
- ❖ 경협사무소 방문 3일전까지 군사분계선(MDL) 출입통행계획을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입력
 - 자가차량 이용시에는 '수송장비 운행승인' 을 받아야 하며, 노트북도 사전 신고후 휴대 가능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절차





9. 사업협약시 기본자세와 고려할 사항은?

사업 당사자간 직접 협의는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뢰구축을 위한 성실한 협의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업협약시 기본자세

- ❖ 감상주의를 지양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협의를 진행
 -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의 언급 자제
- ❖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답변
- ❖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쌍방간 협의를 통해 절충

사업협약시 고려사항

- ❖ 협의시에는 가급적 실무 기술진을 동행
 - 북측의 생산담당 기업소 관계자가 협의시 참석하도록 사전에 북측과 협조
- ❖ 사업시행전 사업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수준 및 설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북측이 제작한 제품 및 견본 확인 등을 통해 기술 및 품질 수준을 파악
 - 의류 등 위탁가공의 경우 협의시 견본 및 제작용 원부자재를 지참하고 북측에 시제품 제작을 요청
- ❖ 매회 협의시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





10. 사업협약시 분야별 주요 협의내용은?

협의내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진행되므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전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업분야별 협의 내용

- ❖ 농림수산물 반입
 - 품질검사 방법 및 장소
 - 제품 세부규격 및 수송방법(남북간 직항로)
- ❖ 의류 위탁가공
 - 기술 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
 - 문제발생시 또는 정기적인 현장 방문·점검
 - 납기, 단가, 위탁가공비 송금방법 등
- ❖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 북측의 기술수준
 - 시범사업의 선행 추진 여부
 - 제품 개발과정에서 원활한 기술협의 문제
 - 장비 제공 여부 및 규모
 - 사업진행중 북측 개발인력의 대체 투입 제한 등
- ❖ 전기·전자, 경공업 등 위탁가공 및 협력사업
 - 설비 제공시 사전 현장방문
 - 공장 규모·구조, 전력, 용수 등 제반 현장조건
 - 공장운영시 자율권 보장 수준
 - 북측내 기존 설비, 건물의 이용 가능성 등





세부사항별 체크 포인트

❖ 원부자재 공급 및 제품 반입

- 원부자재 공급 수량, 규격, 시기, 허용 손실률 및 재공급 문제
※ 위탁가공 등을 위한 원부자재 제공 과정에서 부족 문제 수시 발생
- 원부자재와 생산제품의 남북간 또는 북측내 운송방법과 비용 분담 문제 등
※ 인천-남포간 직항, 중국(단둥) 경유 항로, 용선 등 사업내용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

❖ 위탁가공비

- 위탁가공비 산정시 생산품목, 주문 수량, 디자인, 작업 난이도, 투입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위탁가공 단가는 국내 및 해외생산 사례를 고려하되, 물류비용, 금융비용 등 대북사업 특수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도 감안
- 위탁가공 단가 산정관련 설명 논리 및 설비투자시 설비대금의 상환 방법 등

❖ 기 타

-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투자방식(합영, 합작 등), 쌍방 투자규모 및 출자내용, 경영관리기구 구성방안
- 위탁가공 과정에서 물량 증가 등으로 제품 생산공장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요구
- 생산제품을 북측내에서 판매·처분하는 사업의 경우 대금회수 방법
-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호 연락방법 및 품질불량, 납기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안

연도별 사업형태별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현황

- 2005.11~12월 43건, 2006년 446건, 2007.1~10월 401건
- 사업형태 별로는 협력사업 231건, 위탁가공교역 460건, 일반교역 137건, 지원사업 62건





11. 계약체결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에 포함시킬 내용은?

사업추진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진행되므로 계약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유의할 사항

- ❖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가 이루어진 후 계약 체결
- ❖ 사업협의 단계에서 합의한 사항을 가급적 계약서에 포함
 - 계약서 작성시 경험지원 유관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
- ❖ 국제관행에 부합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노력
- ❖ 일방의 자의적 해석이나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남측 또는 북측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
- ❖ 권한있는 당사자(남측은 대표자, 북측은 관련 총회사 총사장 등)의 서명으로 책임 소재 명확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합격사업

- 사업주체(계약당사자) 명기
- 합영(혹은 합작, 단독투자 등)기업의 경영 목적, 범위, 규모
- 총투자액 및 등록자본
- 사업주체(계약당사자)의 의무
- 기술이전 및 상표사용
- 원재료, 부품 조달 및 제품 판매
- 이사회 구성
- 경영관리기구 조직 및 운영
- 노동관리
- 세무, 재무, 회계감사
- 이익분배
- 사업기간
-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
- 보험 가입
- 계약 수정, 변경 및 해제
- 위약 책임
- 불가항력 조항
- 준거법, 분쟁해결 등



농림수산물 반입 및 위탁가공구역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납기 및 인도조건(CIF, CNF, FOB 등)
- 대금결제조건 (T/T결제)의 경우 계좌번호 및 수취인 명기
- 계약서 유효기간
- 계약당사자의 의무
- 포장방법
- 상품 검사방법
-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상호 연락방법
- 기타 사업 특성상 수반될 수 있는 사항



기 타

- 설비공급 관련 사항 · 설비보호, 유지 · 보수, 설비하자시 책임소재
- 생산 장소, 현지공장 방문 · 기술지도
- 원부자재 공급관련 물량, 규격, 허용 손실률
- 기타 지적재산권 등 권리보호 · 비밀유지



남북경협사업 - 사업실행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2. 사업과정에서 견본과 시제품은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가?
1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측과 업무연락 방법은?
14. 사업개시를 위한 조업준비는 어떻게?
15. 사업과정에서 북측 실무자와의 기술협의를?
16. 사업추진시 각종 문서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7. 북측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송과 통관절차는?
18. 대금결제 방법은?
19.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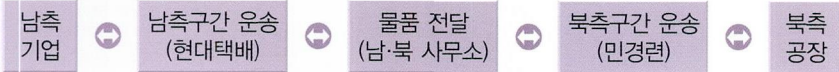


12. 사업과정에서 견본과 시제품은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가?

견본 및 견본 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는 개성(경협사무소)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이 제작한 시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탁가공구역 등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견본을 개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견본 송달지원 체계를 마련(200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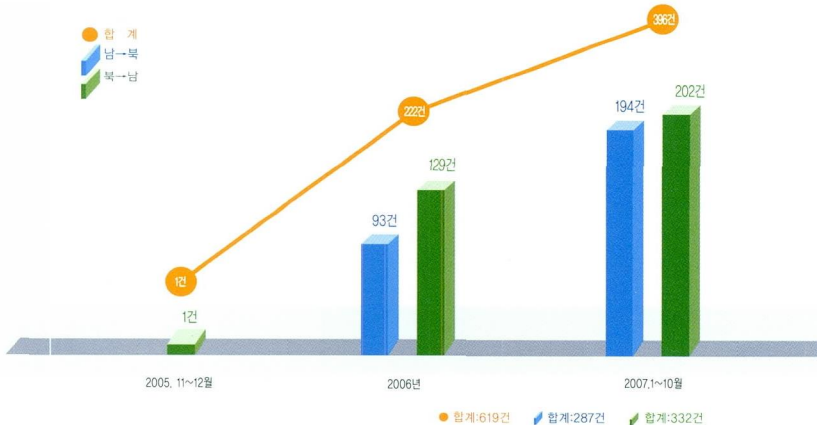
견본 송달 지원 체계



- ◆ 택배시스템을 통한 주 6회 정례적 남북간 견본 송달체계 확립으로 위탁가공사업의 수익성 및 편의성 제고에 기여

☞ 경협사무소 블로그(<http://blog.naver.com/unioffice>)에 자세한 견본송달 절차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남북기업간 견본송달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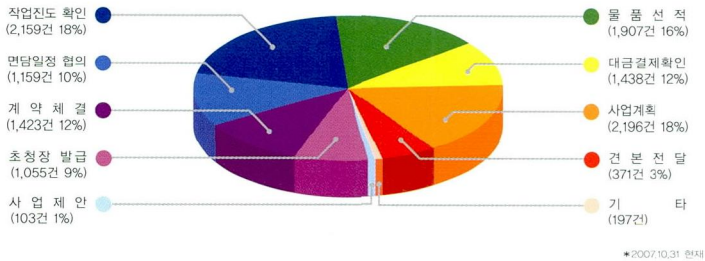


1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측과의 업무연락 방법은?

남북기업간 직접 통신과 현장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사무소가 남북기업간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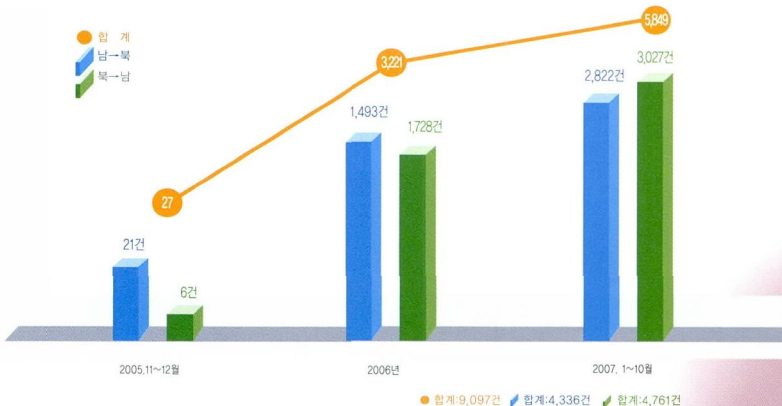
- 경험사무소는 초청장 발급, 면담일정 협의, 계약체결, 견본전달, 작업진도 파악, 물품 선적 확인, 대금결제 확인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중개기능을 수행

경험사무소가 지원하는 중개기능



- 중개업무는 단순한 문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처리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애로 해결지원도 병행

연도별 남북기업간 문건 중개 현황





14. 사업개시를 위한 조업준비는 어떻게?

본격적 대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현장 방문, 생산설비 반출, 원부자재 공급 등 철저한 조업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현장 방문

- ❖ 사업착수전 현지 공장 방문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북측을 설득
 - 사전 현장방문시 전력, 용수 등 공장 입지 여건, 생산능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 ※ 특히 전력의 경우 공장에 인입되는 전기의 안정성, 공장내부의 전기시설 상태 등 점검 필요

생산설비 반출

- ❖ 설비 반출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현장 방문을 통해 공장 입지여건, 구조 등을 확인하고 생산라인 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 기술진과 함께 방문하여 확인하되, 현지 공장상황을 잘 아는 북측의 현장 관계자와 직접 협의
 - 현장확인 후 입지, 생산 등의 최종 조율 및 합의는 계약당사자인 총회사와 진행
- ❖ 설비 반출과 동시에 기술인력 방북을 통해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북측지역 현지 기술지도 지원제도 활용 가능
- ❖ 자유로운 방북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설비나 생산공정상 문제 발생시에 대비 북측의 자체 해결 능력도 배양
- ❖ 전기·전자 부품 위탁가공의 경우 외국산 부품의 북한으로의 반출에 따른 제한 여부도 점검
- ❖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용어도 미리 문서상으로 정리하여 상호 교환





원부자재 공급

- ❖ 원부자재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
 - 적기공급을 위해서는 여유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부자재중 한 품목이라도 부족할 경우 현지조달 불가
- ❖ 특히 의류 위탁가공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반출입 승인 신청 및 투자 신고

- ▶ 설비, 원부자재중 승인대상 품목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반출 승인 신청
 - 일반적으로 위탁가공용 반출설비는 승인대상품목이고, 생산용 원부자재는 포괄승인품목임
 - 생산제품 등의 반입시에도 승인대상 품목인 경우 반입 승인 신청 필요
- ▶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투자자금을 부족에 송금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이 필요하며, 현물투자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물자 반출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 즉시 통보





15. 사업과정에서 북측 실무자와의 기술협의를 ?

북측 현지에서의 기술지도, 작업지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실무자가 경험사무소에서 만나 견본 또는 시제품을 놓고 기술적 문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 경험사무소에서 남북 실무자들이 만나 견본 또는 시제품을 보면서 기술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생산제품의 품질 제고 가능
- ❖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전기전자분야에서의 기술협약도 활발
 - 2007년 10월 현재 경험사무소에서 개최된 기술협약은 총 114회(의류 위탁가공 63회, 전기·전자분야 47회 기타분야 4회 등)



blog.naver.com/unioffice



16. 사업추진시 각종 문서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등 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협사무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 ❖ 북측과의 사업추진 관련 문건(원산지증명서, 계약서, 방북 초청장 등)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협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
- ❖ 경협사무소가 남북 당국차원에서 각종 문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남북 기업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





17. 북측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송과 통관절차는?

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남북간 교역제품의 통관은 일반수출입 통관절차가 준용되고, 북한산 물품 반입시에는 원산지 확인을 거쳐 관세가 면제됩니다.

생산제품의 운송

- ❖ 남북경협으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해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긴급한 물품의 경우에는 항공편도 이용
 - 개성공단지역 생산제품은 육로를 통해 운송



- ❖ 남북간 주요 해상운송 경로는 인천↔남포, 인천↔단동↔신의주, 인천↔해주, 부산↔나진 등을 이용
 - 항공은 중국 북경, 심양, 대련 등을 경유

남북간 정기 해상운송 항로

*2007. 10.25 기준

구 간	운 횡 수	입항요일		출항요일		해 운 선 사	선 명 (톤 수)	연 락 처	화물운임(\$)		비 고
		남한 기준	북한 (3국) 기준	남한 기준	북한 (3국) 기준				20' (유류 할증)	20' (유류 할증)	
인천-남포	주1회	화	목	수	월	국양해운	트레이드프롬츠호 (2,000톤)	6496-2738	720	1,440	
부산-나진	주1회	월	목	화	토	동용해운	추심호 (3,240톤)	3676-0066	850	1,500	
부산-나진	주1회	일	수	월	금	국보해운 (대리점)	비파호 (1,595톤)	771-5514	850	1,500	북한선박
속초-자루비노	주2회	일,목	화,금	월,목	수,토	동춘항운	뉴동춘호 (13,213톤)	720-0101	700	1,300	여객화물
인천-단동	주3회	월,수,금	화,목,토	화,수,금	화,목,일	단동국제항운	동방명주호 (10,624톤)	713-5522	650 (40)	1,150 (80)	여객화물
인천-단동	주2회	월,목	화,토	월,목	수,일	두우해운	민유호 (2,453톤)	2022-8833	300 (50)	600 (100)	
평택-단동-대련	주1회	화	목	수	토	두우해운	티안풍호 (3,438톤)	2022-8833	300 (50)	600 (100)	

*제3국(중국,러시아) 경유 운항구간 포함.



생산제품의 통관

- ◆ 남북교역 물품 통관은 대부분 일반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북한산 물품 반입시 관세 면제에 따른 원산지 확인 절차가 수반
 - 북측에서 제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신고서(승인대상품목은 반입승인서), 상업송장, 보험증서, 선하증권 사본, 최근 2개월간 선박항해일지, 원산지증명서, 검역물품은 검역증 등이 필요
- ◆ 선적 관련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가 누락되어, 남측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필요
 - 통관관련 서류 누락시 경협사무소를 통해 북측의 협조를 요청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증명

- ▶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03.9.29)에 따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반드시 필요
 - 원산지증명서상의 송하인, 수하인은 반입신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당해 물품의 수량, 중량도 반입신고서의 수량 이내여야 함





18. 대금결제 방법은?

대금결제통화는 달러, 유로화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제통화, 적용 환율 및 대금지급 시기 등에 대해 남북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 ❖ 대북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위탁가공비 등은 대부분 북측이 지정하는 제3국 계좌에 송금환 방식(T/T)으로 대금결제
 - 결제통화 : 달러화 또는 유로화
 - 송금계좌 : 조선광선은행
 - 달러화 : 21014106500220100919
 - 유로화 : 21033106500220100929 또는 82079648021038
 - ※ 계좌번호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용 환율에 대하여 상호 명확한 사전합의 필요
- ❖ 대금지급 시기는 '선적전' 또는 '선적후', '제품 검사후' 등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생산 또는 반입 제품을 확인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대금지급 문제로 인해 상호간 신뢰가 손상되거나,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금결제 시기에 대한 사전 합의 필요





19.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당사자간 해결이 중요하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계약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 ❖ 대북사업 추진중에 발생하는 클레임의 주요 원인은 납기 지연, 품질 불량, 수량 부족 등임
 - 납기지연의 경우 북측의 고의적 지연보다 선박 운항여건 미비, 원부자재 부족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므로 납기를 여유있게 설정
 - 품질검사원 파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어려울 경우 북측이 품질을 보장하도록 요구
 - 품질문제 발생시 즉각 조사보고서를 작성 송부하여 북측이 상황을 인지하도록 조치
 - 농수산물의 경우 현지 품질검수, 수량 확인 등이 어려우므로 선적시 사진을 찍어 Fax 등으로 미리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

-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계약서 등에 의거한 당사자간 해결이 중요
 - 계약체결시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미리 충분히 논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
 - ※ 남북 기업간의 상사분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가능



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소

2005. 10. 28

경제협력협약사무소



기타 참고사항

- 20.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의 지원기능
- 21.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블로그
- 22. 민경련 산하 총회사별 담당분야 및 연락처



20.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의 지원 가능

- ◆ 경협사무소는 남북간 직접거래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2005년 10월에 설치된 당국간 상시적 협의기관으로 개성공단에 위치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통일부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서울분소 운영
- ◆ 경협사무소에서는 남과 북의 관계자가 함께 일하면서 경협여건을 개선하고, 남북기업사이 사업추진을 지원
 - 남북 교역 및 투자의 소개, 지원, 자문
 - 민간 경제협력 당사자간 사업협의 지원
 - 남북간 교역 및 투자관련 정보 제공
 - 교역/투자 설명회 등 경협 촉진사업 추진
 - 남북 당국간 회담 지원 등
- ◆ 경협사무소는 남북경협 추진기업의 사업계획서 전달, 초청장 발급 지원, 기업간 사업협의 지원, 견본송달, 문서전달 중개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실행 단계까지 다양하게 지원

단계	계 획 수 립	사 업 협 의	계 약 체 결	사 업 실 행
경 협 지 원 업 무	사업계획서 전달			
	북측 사업상대자 알선			
	북측 희망사업 소개			
		초청장 발급 지원		
		사업자간 면담 지원		
		사업추진 관련 자료 전달 중개 및 간접통신 지원		
		계약서 작성 자문		
			사업관련 견본 송달 지원	
			계약서 문건 진위 확인	
				기술협의 지원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연락처

| 개성사무소 | Tel 001-8585-2100~5, Fax 001-8585-2109/2110
| 서울분소 | Tel 02-2100-5927~8, Fax 02-2100-5929

